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명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65
----------	------

발의연월일 : 2017. 2. 23.

발의자 : 최명길 · 김영진 · 윤호중

박광온 · 노웅래 · 전혜숙

고용진 · 박용진 · 이원욱

김영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하여 주택자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시행되었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2003년 12월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시장의 활성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2015년 7월 24일 자로 폐지되었음.

이에 현행법 제9조에 남아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2호마목 삭제).

법률 제 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 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생 략)</p> <p>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용자</p> <p>가. ~ 라. (생 략)</p> <p>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p> <p>바. · 사. (생 략)</p> <p>3. ~ 9. (생 략)</p> <p>② ~ ⑤ (생 략)</p>	<p>제9조(기금의 용도)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바. · 사. (현행과 같음)</p> <p>3. ~ 9.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